

대학원학칙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시행세칙

2004.3.1. 일부개정
2004.9.1. 일부개정
2007.9.1. 일부개정
2010.3.1. 일부개정
2011.3.1. 일부개정
2015.3.1. 일부개정
2018.9.1. 일부개정
2019.9.1. 일부개정
2021.3.1. 일부개정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 (이하 "학칙"이라 함)이 생명환경과학 대학원 (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생명산업, 식품산업 및 생물공학과 환경공학분야의 응용연구와 교육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실재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탁월한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6월 (11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재입학의 제한)

-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하 "재입학자"로 함)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③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 6 조 (전공 변경)

-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 학기초 또는 3 학기초 학적변동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전공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 허가원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
 3. 성적증명서

제 7 조 (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 담당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은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다.
- ④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5학기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학점인정)

-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 (국방대학원 , 국방참모대학 ,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중 본 대학원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군 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군제휴협약 "에 따른다.
- ④ 석사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상위과정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6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한 자는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 요구하는 전공의 교과목이 같은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인정한다.
- ⑥ 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한 대학원(본교 일반대학원 학점교류 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시험) 학점의 기본개념인 1 학점 당 주 3시간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설과목에 대한 수시시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제 11 조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 신청은 제2차 학기 초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지도교수 변경)

-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 13조 (학위청구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논문(또는 학과내규에서 정한 연구보고서)을 제출할 수 있다.

- 1. 대학원학칙 제32조 [별표 4]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평점 3.0 이상)을 이수
- 2. 졸업자격시험 합격
- 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제 14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제출은 3회에 한하며, 학위 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의 연한은 수료 후 8년 이내로 한다.

제 15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계획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제5차 학기 초에 논문계획서 (또는 연구보고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출 절차 및 시기)

-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6월, 후기는 11월로 한다.
- ③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양식, 부수 및 제출시기에 관한 것은 매학기 공고 한다.

제 17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시험의 종류)

-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으로 시행한다. 그 밖의 외국어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전공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 ④ 전공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재 응시 한다.
- ⑤ 전공시험 성적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⑥ TOEIC, TOEFL, TOSEL(A), TEPS, IELTS 등에서 학사내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과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제어학원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B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 19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시험은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 시기는 매학기 초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 22 조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방법)

-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불합격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하여 6개월 이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23 조 (학위수여 심의) 학과 전공별 해당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를 심의한다.

제 24 조 (장학금)

-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등록 5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결정은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자비로 수학하는 공무원은 수업료 20%를 감면하여 준다.

제 25 조 (공개강좌)

- ① 이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6 조 (연구생)

- ① 이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본 대학원이 실시하는 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할 수 있다.

제 27 조 (연구기간 및 연구과제)

-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28 조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 ①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 ② 그 밖에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8조6항의 외국어시험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① 개정된 제1조, 제5조2항, 제11조, 제14조 규정은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② 신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 입학생들도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교과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신 교과과정에 의하여 폐지된 논문세미나 (공통필수)는 각 학과에서 요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이를 공통필수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개정사항은 2011년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4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위 조항에 없는 내용은 상위 부서에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6항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 문구 수정, 제13조 1호 내지 3호, 제29조 신설)
2. (적용대상) 제13조는 2017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